

대구지방법원 2022. 1. 21 선고 2021가단1426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21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 내지 14번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20. 12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A은 소외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1. 1. 6. 접수 제199호로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순번 15번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2020. 12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소외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1. 1. 6. 접수 제2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 김광남

별지